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4 선고 2024가단5104942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

담당변호사 강정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수

변 론 종 결 2024. 7. 17.

판 결 선 고 2024. 9. 4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0. 31.부터 2024. 3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2019. 10. 28.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외 1필지 소재 D건물 E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,000만 원, 임대기간 2019. 10. 31.부터 2021. 10. 31.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,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, 원고와 피고가 2021. 10. 31. 위 임대차계약을 2023. 10. 30.까지 갱신한 사실, 원고가 위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23. 10. 29.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,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,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이후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23. 10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. 3. 15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미영